

정 관

2025. 3

정 관

제정 2022. 9. 23

개정 2025. 3. 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nstruction Materials Recycling Cooperative” (약칭 “KCRC”)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및 국가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3.18.>

제4조(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 조합의 광고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는 경우 일간지 등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03.18.>

1.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를 위한 제반 사업 (이하 “재활용공제사업”이라 한다)

2. 삭제 <2025.03.18.>

3. 회수·재활용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4.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해당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
5. 건축토목용 제품의 제조·수입 및 폐기물의 발생·회수·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
6. 건축토목용 제품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건축토목용 제품 폐기물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9. 정부 및 유관단체, 환경단체 등과의 대외 협력
10.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12. 기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 및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재활용공제사업 등) ①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공제사업 참여 및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비용(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납부를 확인하는 참여약정서를 제출받고,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재활용의무량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의무량 달성을 위하여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적법한 회수·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담금의 산정, 납부, 공제 처리 및 재활용지원금의 산정, 지급, 정산,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 등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5.03.18.>

제3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일반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03.18.>

② 각 회원별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18.>

1. 공제회원 : 재활용공제사업에 참여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2. 개별이행회원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3. 삭제 <2025.03.18.>
4. 일반회원 : 재활용의무대상품목 또는 자발적협약체결품목의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5. 특별회원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고,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으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가입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4. 분담금 등 회원에게 부과되는 제비용의 납부
5. 제13조에 따른 신고

②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8.>

③ 일반회원은 재활용목표 등 조합과의 위수탁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회수·재활용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탈퇴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폐업했을 때
5.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때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조합은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분담금 및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를 조합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재활용실적자료의 허위 제출, 고의 미제출 등 부정·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한 때
4. 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5. 법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상실한다.

제12조(회원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조합의 목적 수행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을 때
4. 조합의 명예 훼손 또는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 서면 등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에게 해당 제명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상실한다.

제13조(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때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사 원

제14조(사원의 자격) ① 조합의 사원은 제8조에 따른 공제회원 중에서 분담금 납부액, 재활용의무대상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5.03.18.>

②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원의 총수는 50인 이내로 한다.

③ 사원으로 선임된 자는 별도로 정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6조(사원의 의무)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4. 제13조에 따른 신고

② 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사원의 자격상실) ① 사원이 제11조에 따른 회원 탈퇴 또는 제12조에 따른 회원 제명되는 때에는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사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원에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권리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

제18조(회원 규정의 준용) 사원에 관한 탈퇴 및 제명,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임 원 및 직 원

제19조(임원 구성)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하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 중에서 이사장 1인은 상근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근직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상근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원의 선임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환경부장관의 취임승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활용사업자의 대표자, 소속임원,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자
8.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의 특수 관계인(친계 8촌, 모계 4촌 이내)에 해당되는 자

제2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정관,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조합에 대하여 현저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키거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관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및 상근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보수)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직원 및 직제 등)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제를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복무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임직원 겸직제한) ① 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은 조합과 계약된 재활용사업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6장 총 회

제27조(총회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조합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9조(총회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나 궐위 등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이사장 및 상근이사는 제외한다.)
3. 사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의결시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및 해산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 참여제한)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3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사원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 사 회

제3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선임 및 사원·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대여 및 차입자금 운영, 세계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참여제한)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본인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8장 분 담 금 등

제40조(분담금) ①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03.18.>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별 분담금은 제43조에 따른 비용산정 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하여 발생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에 대비하여 이를 분담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3.18.>

③ 분담금과 관련한 회계는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03.18.>

⑤ 분담금과 가산금의 산출, 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분담금의 양도·양수 금지)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5.03.18.>

제42조(재활용부과금 납부) ① 조합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거나,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삭제 <2025.03.18.>

제43조(비용산정위원회) ① 조합은 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로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용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재활용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조정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분담금 단가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결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비용산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용산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는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비용산정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비용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방법,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 산 및 회 계

제44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고자 할 때,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장기차입이나 권리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원)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분담금
2. 가입비 및 회비
3.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6. 사업에 수반된 수입

7. 기타 수익금

제46조(수익사업) ① 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익사업의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47조(회계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회계 운용) ①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0조(세계잉여금) 조합은 세계잉여금(수지결산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적립 관리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 및 결산) 조합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회계감사) 조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장 해 산

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의결
2. 조합의 파산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청산인) 조합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5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

제11장 보 칙

제56조(회비 등의 미반환)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이 탈퇴 및 제명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57조(업무보고) 조합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표창)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9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경미한 변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1조(준용규정) 이 정관이나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설립받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조(주사무소) 최초의 주사무소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2025.03.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